

법관 최희준 탄핵소추안

의안 번호	0000
----------	------

발의연월일 : 2019. 1. .

발 의 자 : 000 의원 외 00인

주 문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 최희준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최희준

직 위 : 법관

탄핵소추의 사유

헌법 제65조 제1항은 법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관 최희준(이하 '피소추자'라고 한다)은 아래에서 보듯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피소추자는 민주공화국 규정(헌법 제1조)에서 파생되는 권력분립의 원칙,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7조), 재판독립의 원칙 (헌법 제103조) 등 헌법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형법 제127조,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 제3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7조, 법원조직법 제50조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피소추자의 헌법, 법률위반 행위는 다른 피소추자들과 함께 양승태 대법원장(2011. 9. ~ 2017. 9.)에 의하여 박병대 법원행정처장(2014. 2. ~ 2016. 2. 대법관 겸임), 고영한 법원행정처장(2016. 2. ~ 2017. 5.), 임종헌 (2012. 8. ~ 2015. 8. 기획조정실장, 2015. 8. ~ 2017. 3.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서 내려온 포괄적인 지시와 활동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다.

이는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의무 및 청렴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오로지 신뢰에 기반하여 사법주권을 위임해 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것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 음

1. 피소추자의 지위

피소추자는 2002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등을 거쳐 2015. 2.부터 2018. 2.까지 헌법재판소 파견법관으로 근무한 후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 중인 자이다.

2. 피소추자의 행위

가. 양형실장 이규진의 헌법재판소 관련 정보 유출 지시(2018. 11. 14. 자 임종헌 공소장 96면)

2015. 3. 중순경 당시 양형실장이었던 이규진은 피소추인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에게 파견법관들에 대한 인사평정권이 법원행정처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파견 법관들이 법원과 관련된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모두 최희준 부장에게 바로 전달 해 달라’고 말하고, 피소추인에게 ‘법원과 관련한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내부 평의 등 정보가 확인되면 바로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피소추인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건들에 대한 구체적 진행경과, 비공개 평의 내용, 헌법재판관과 재판연구관들의 사건에 대한 의견, 토론내용 및 사건 보고서 등의 정보와 헌법재판소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의 추진 상황, 헌법재판관들의 내부 동향 및 관련 비공개 내부 문건 등을 입수하여 자신이나 자신을 보좌하여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정책실 심의관 문성호에게 보내줄 것을 지시하였다.

나. 헌법재판소 진행 사건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유출

1) 2015. 7.~9.경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2018. 11. 14. 자 임종헌 공소장 97면)

피소추인은 위와 같은 이규진의 지시에 따라 2015. 3. 중순경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건 중 법원과의 관계에서 민감한 사건들의 헌법재판관 평의 내용, 재판연구원 토론과 사건보고서의 내용 및 기타 헌법재판관들의 내부 동향을 파악하던 중, 2015. 7. 1.경부터 이규진에게 민주화운동보상법 위헌심판제청사건 등의 주심 재판관, 쟁점, 재판관 평의 일정 등의 진행경과를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다수 사건의 진행상황과 내부 동향 및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들이 작성하여 헌법재판관들에게 보고한 사건보고서 등을 보고 전달하였고, 특히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8건(관습법 헌법소원 사건,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관련 사건, 현대 자동차 비정규 노조 업무방해 사건, 제주대학교 공무원 사건, GS칼텍스 사건,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형사소송 성공보수 무효 사건, 긴급조치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배당 상태, 재판연구원들의 토론 결과 및 보고 내용, 평의 회부 여부, 평의 결과, 선고 예상 시점 등이 포함된 정보와 자료를 이규진에게 보고하였다.

2). 2015. 10.경 헌법재판소의 한일협정 관련 헌법소원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2018. 11. 14. 자 임종헌 공소장 98면)

피소추인은 2015. 10. 5.경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임종헌으로부터 ‘헌법재판소 심리 중인 한일협정 관련 사건들의 진행경과와 담당연구원들이 작성하여 헌법재판관에게 보고한 내부 사건보고서 등 자료를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연구원들만 직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접근권한이 있는 내부망 자료실에 접속 하여 연구관보고서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①박세영 헌법재판소연구관이 작성한 2012헌마939사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위헌확인)의 사전심사보고서, ②김형연 연구관이 작성한 2014헌마888사건(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의 사전심사보고서, ③노희범 연구관이 작성한 2009헌바317사건(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의 연구보고서, ④노희범 연구관이 작성한 2011헌바55사건(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2항(a)호 등 위헌소원)의 연구보고서를 확보한 후 이를 임종헌과 이규진에게 각각 이메일로 송부하고, 위 2011헌바55 사건의 당시 담당연구관인 이황희로부터 파악한 청구인 승소가능성에 대한 예상 의견을 포함한 각 사건들의 진행경과와 예상결과를 함께 보고하였다.

3). 2016. 2.경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2018. 11. 14. 자 임종헌 공소장 99면)

피소추인은 이규진에게 헌법재판소 심리 중인 사건의 진행상황을 계속하여 보고하였고, 특히 위와 같이 2015. 9. 15.에 보고서로 정리한 내용보다 한 층 심화된 사건경과를 확인한 후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10건(관습법 헌법소원 사건, 민주화운동 관련 자 보상 관련 사건,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조 업무방해 사건, 제주대학교 공무원 사건, GS칼텍스 사건,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공무원의제규정 관련 시행령 사건, 채무자 회생 등에 관한 대법원규칙 사건, 형사소송 성공보수 무효 사건, 긴급조치 사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진행된 사건 경과, 주임연구관 재배정, 평의 결과(한정위헌 의견을 취한 재판관 수 및 각 재판관들의 견해 포함), 한정위헌 결정의 예상 등 정보와

사건보고서 등 자료를 이규진에게 보고하였다.

4). 2016. 11.~2017. 3.경 탄핵심판사건 진행상황 등 정보 및 자료 수집 (2018. 11. 14. 자 임종헌 공소장 99면)

임종헌은 2016. 11. 중순경 국회에서 박근혜 前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규진에게 ‘탄핵 관련한 현재의 동향과 자료를 잘 확인하고, 탄핵심판 절차 관련 자료도 잘 받아두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규진은 그 무렵부터 피소추인에게 탄핵심판사건의 내부 진행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소추인은 2016. 11. 22.경 이규진에게 ‘헌법재판소 정책심의관인 이황희 연구관이 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절차가 우선적으로 준용될 것이라고 의견제시를 하였고, 김정원 선임연구관은 탄핵심판은 순수한 형사재판이 아니고 제3의 징계 재판처럼 운용되어야 하므로 절차진행과정에서 절차법 준용 등에 관한 개별 쟁점이 생길 때마다 재판부가 결정으로 선언해 주어야 하는 것이라는 의견제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2017. 1. 25.경 이규진에게 ‘오늘 변론기일에는 피청구인 증인 신청에 대한 채택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인데, 문형표 등 4명만 추가 채택할 예정이고, 이것은 헌법재판관들의 격론 끝에 결정된 사항이다’라는 취지로 보고하고, 같은 날 ‘김정원 선임연구관은 인용 의견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전원일치면 좋은데 반대의견이 나올까봐 걱정”이라고 말하였으며 안창호 재판관은 “인용하더라도 국격이 걸린 문제이므로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경까지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재판연구관 들의 동향을 계속하여 보고하고 그 무렵 수회에 걸쳐 탄핵심판 사건의 기록 중 주요 부분(의견서, 준비서면, 답변서, 입증계획, 서증제출서, 사실조회 공문 및 회신, 사전 제출된 증인신문사항, 반대신문사항 및 ‘고영태 녹취록’ 등 증거서류 등)을 파일로 모두 전달하였다.

5) 소결

이와 같이 피소추인은 위 1) 내지 4)항 을 비롯하여 2015. 7.경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별지목록 (1)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자료 유출 내역(사건 정보)’ 기재와 같이 헌법재판소 심리 중인 사건의 평의결과 등 내부 진행 정보와 사전심사보고서, 쟁점보고서, 연구보고서 등 사건보고서 및 개별 사건의 기록에 첨부된 청구서, 의견서, 답변서, 참고서면 등 자료 총 193건을 이규진, 임종헌 등에게 전달하였다.

다. 헌법재판소가 추진하는 정책 및 동향 자료의 수집 및 유출

1) 2016. 7.경 헌법재판소의 정책 및 동향 수집(2018. 11. 14. 자 임종헌 공소장 101면)

피소추인은 2016. 7. 15.경 이규진의 지시에 따라 당시 논의되던 개헌, 헌법재판소법 개정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 추진 정책 관련 정보가 담긴 다수의 헌법재판소의 비공개 내부 자료들[헌법개정에 대비한 헌법재판소 대응전략(2008. 6.) 등]을 헌법재판소 내부전산망을 이용해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규진에게 전달하였다.

2) 2016. 9.경 헌법재판소장 관련 동향 수집(2018. 11. 14. 자 임종헌 공소장 101면)

피소추인은 2016. 9. 2.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주재 ‘연구관 부장 및 팀장 회의’에 참석하여 차기 헌법재판소장 및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장의 비공개 발언을 청취한 후, 같은 날 이규진에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차기 헌법재판소장 문제와 관련하여 “나는 연임할 생각이 없다. 연임 제의가 오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연임 때문에 소장이 임명권자를 의식하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 국제행사 여럿을 유치하고 국제회의에서 한 발언 내용 등으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재판관들도 오해

하는 것 같아 평의에서도 이런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공개적으로 해명하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므로 외부에 밝힐 일은 아니다”라고 발언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3) 2016. 9.~10.경 헌법재판소의 정책 및 동향 수집(2018. 11. 14. 자 임종헌 공소장 102면)

피소추인은 2016. 9. 23.경 이춘석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헌법재판소장 임기 등에 관련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개정을 강하게 추진하는 헌법재판소의 내부 동향을 파악한 다음, 2016. 10. 10.경 이규진에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김용헌 사무처장이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김정원 정책실장은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차기 헌법재판소장과 관련하여 박한철 소장은 강일원 재판관을 지지하고 있고 최근 평의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특정 재판관에게 면박을 주었으며, 강일원 재판관은 박한철 소장의 연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등의 현재 내부 상황을 보고하였다.

4) 헌법재판소의 정책 및 동향 129건 수집(2018. 11. 14. 자 임종헌 공소장 103면)

피소추인은 위 1) 내지 3)항을 비롯하여 2015. 11.경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목록 (2)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자료 유출 내역(사건 외 동향)’ 기재와 같이 헌법재판소 업무현황 및 업무계획 등이 담긴 주요업무계획, 월례회의, 실국장회의 등 내부 자료, 헌법재판소장 주재 내부 비공개 회의 내용 등 헌법재판소가 추진하는 정책 및 내부 동향에 대한 자료와 정보 총 129건을 이규진, 임종헌 등에게 전달하였다.

3.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여부

가. 관련 규정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이러한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제7조 등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은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특히,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는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조직법 제50조는 업무의 성실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할 때 허가되는 것이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의하면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파견근무 중인 자는 업무의 성질상 자신의 원 소속 기관인 법원의 업무지시를 받을 수 없고 파견된 헌법재판소장의 업무지시에 따를 의무만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하는 한편 제1조에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이러한 민주주의 제도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구체화 된다(헌법재판소 2014. 12. 19. 2013헌다 1, 헌법재판소 2001. 9. 27. 2000헌마238, 헌법재판소 1990. 4. 2. 89헌가 113 등). 따라서 권력분립제도는 우리 헌법질서의 중요한 일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규정한 헌법기관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는 법원을 비롯한 다른 헌법기관으로부터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나. 3차보고서의 판단기준

한편 3차보고서 19쪽에서는 의혹별 조사결과를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평가 기준을 밝힌 바 있다.

“정책결정을 통하여 실행행위로 나간 경우 뿐만 아니라 문서작성행위, 그 작성지시행위, 논의 과정, 정책결정행위 등도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면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을 침해·훼손하였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그에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로 분류,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각 행위별 평가이며 각 행위자별로 인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 남용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대법원 특조단 스스로가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 침해나 훼손 여부”를 기준으로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판단했다는 것이고 위 기준인 재판의 독립 등은 헌법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결국 3차 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3차 조사단은 위 헌법상의 기준에 비추어 정도가 남용에 미치지 않는 것을 부적절로 평가하였다는 것인데, 부적절로 평가된 부분도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에 인적 책임을 물을 때는 남용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실조사의혹을 받아 왔던 3차 조사단조차 사법행정권의 남용 또는 부적절로 판단한 행위는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 등 헌법가치의 중대한 위반으로 적어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탄핵소추안에서는 이 기준을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아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 기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 11. 19. 다음과 같은 행위를 중대한 헌법위반으로서 법관 탄핵 소추절차까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의결함으로써, 법관탄핵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

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 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

한편 안동지원 판사들의 제안서 원문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 등은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사건 처리에 관하여 동료나 선배 법관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의 조언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등과 비교하여) 법원의 위상 제고에 유리한지 여부'나 '행정부와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절대 고려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어떠한 선의의 의도나 명분을 갖다 대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법상 범죄 행위로 포섭되지 않거나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여 아무런 역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간다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릴 수밖에 없으므로 탄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법관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스스로 제시한 이러한 법관 탄핵의 판단 기준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헌법정신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3차 조사보고서 판단기준과 함께 특히 임종헌 공소장에 제시된 행위태양의 중대한 헌법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의 기준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라.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피소추자가 이규진, 임종헌 등에게 전달한 정보는 헌법재판소법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평의 내용에 해당하거나 비공개 회의에서 이루어진 발언 또는 비공개 전산망에서 다운로드 받은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는 모두 직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이규진, 임종헌 등에게 전달한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

특히 이규진은 피소추자에게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의 유출을 지시하면서 “파견법관”의 인사평가권이 법원에 있음“을 상기시킨 바 있다. 즉, 피소추자가 위와 같이 이규진의 지시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를 유출할 것은 공익적 목적이라기보다는 유리한 인사평가라는 개인적 목적이 강한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공정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규정한 부패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파견 공무원이 파견기관의 장이 아닌 원 소속 기관의 업무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임종헌, 이규진 등이 피소추자에게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를 유출하라고 지시한 배경에는 당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으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한 결정을 양산하여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려한다는 우려,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헌이 논의되고 있다는 우려 등 헌법재판소에 대한 견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를 유출하여 이를 법원행정처에 근무하고 있는 임종헌 등에게 전달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침탈하려는 의도로서 권력 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임종헌은 상고법원 도입 및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등을 위해 당시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검토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던 중, 헌법재판소에도 ‘한일협정’과 관련된 헌법소원사건 등이 심리 중인 사실을 알고 이들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연구관 보고서 등 헌법재판소 내부 자료를 확보하여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한 대응에 참고하기로 마음먹고 피소추인에게 관련 지시를 하였던 것이다(공소

장 98면).

즉, 임종헌이 피소추인에게 헌법재판소 진행 사건의 자료 유출을 지시한 것은 대법원에 진행 중이던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는 헌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재판 독립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탄핵의 정당성

가. 대통령 탄핵과의 차이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파면결정을 선고한다’ 라고 하고 있으므로, ‘헌법, 법률 위반의 정도’와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달리 법관 탄핵에 대하여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경미한 범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2004헌나1).

먼저 법관 탄핵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 즉 국가적 손실, 사법질서 혼란 등을 살펴보면, 법관의 경우는 대통령과 달리 그 수가 3,000여명에 이르고, 그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숫자도 160여명에 이르며, 대법관의 경우조차도 13명에 이른다. 그리하여 설령 위 인원 중 극히 일부에 대하여 탄핵결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그 일시적인 공백을 동료 법관이 메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로인한 국가적 손실이나, 재판의 공백 등 사법질서의 혼란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 탄핵의 경우처럼 상대적으로 중대한 법 위반일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헌법, 법률위반의 정도를 살펴보면, 단순히 법관 1인의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라는 점, 피소추자들 역시 하급 공무원처럼 단순히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향후 출세가 보장된 법원행정처의 핵심 부서 등 근무를 통해 상고법원안 관철이라는 목표를 함께 공유하면서 각자의 행위를 분담하였던 점, 헌법상 결코 침해되서는 안될 재판의 독립,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관련된 것인 점 등에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하다.

한편 법관의 파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 즉 헌법질서 수호와 국가적 이익, 특히 국민의 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 확보의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같이 헌법, 법률위반의 중대성이 클 뿐만 아니라, 법관 파면으로 인한 효과에 있어서도 부정적 측면은 적은 반면 긍정적 측면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형량을 해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형평성 원칙 위배 여부

한편 피소추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법관들의 지시에 따른 것인데다, 이들이 법관 탄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기만료로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하여만 탄핵소추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첫째,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은 아무리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처분에 의하여서는 최고수위가 정직 1년일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을 단지 법관 징계절차에 의하여 최고 정직 1년밖에 처분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사법 불신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즉 사법농단에 관여한 피소추자는 정직처분으로 일시적인 재판업무 배제가 아니라 탄핵을 통한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 법원행정처를 거치는 동안 이른바 판사에서, ‘사법관료’로 변모해온 이들은, 심의관 단계에서부터 발탁되어 나중에 고등부장 승진이 사실상 보장되어 있고 나아가 법원장, 대법관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른바 출세가 보장된 법관 엘리트들이다.

이들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단순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현 차장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이들을 영구히 재판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을 경우, 마치 위에서 시킨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식의 피해자 행세를 통해 동료 판사들 사이에 동정론이 형성될 소지가 있다. 게다가 대법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하는 공무원이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물며, 헌법에 의하여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의 경우에는, 상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명령을 따르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로 하여금 재판장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면, 국민의 법감정 과도 맞지 않는데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피소추자로부터 재판받게 되는 당사자나 대리인 변호사들로부터도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받게 될 것이다.

5. 결론

사법농단으로 인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 오로지 고위법관들의 이익을 추구한 행위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소위 법에 대해 가장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에 설마 스스로 법을 어길 리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왔던 법관들, 그래도 우리 사회에 마지막 믿을만한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왔던 법관들에 의하여,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이라 불리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대법관 이하 고위법관들, 법원행정처의 엘리트 법관들에 의하여 저질러졌다는 점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법관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법관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사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헌법상의 재판독립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미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무너진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아무리 법관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헌법위배 행위에 대하여는 가차 없이 탄핵될 수 있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000 의원 등 00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법관 최희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별지 목록 (1)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자료 유출 내역(사건 정보)’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1	2015. 7. 1.	문성호	헌재 내부 정보	2013헌바359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 등 헌재 심리중인 사건 11건에 대한 청구인, 청구 취지, 배당현황, 주심재판관, 일정 등 사건 정보
2	2015. 7. 6.	이규진	시행령 위헌확인 사건	2012헌마89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1 위헌확인 등 시행령에 대한 위헌소원사건 10건에 대한 주심재판관 및 보고일이 기재되어 있는 문건
3	〃	〃	시행령 위헌 사건	2013헌마403, 450 시행령 사건에 대한 주심재판관, 정쟁, 관련사건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건
4	2015. 7. 9.	○○○	헌재 내부 정보	2012헌바15, 182, 2015헌바73 병역법 위헌소원 사건의 변론 진행 중 ○○○, ○○○ 등 헌법재판관들과 청구인측 참고인 한인섭 교수 사이의 한정위헌 관련 질의 및 응답 내용
5	2015. 8. 31.	〃	2015. 8. 11.자, 2015헌마 784 사전심사보고서	2015헌마784 형사성공보수 사건에 대해 이동욱 ○○○이 작성한 전원재판부 회부 의견의 사전 심사보고서
6	〃	○○○ ○○○	2014. 7. 29.자, 2015헌마 732 사전심사보고서	2015헌마732 긴급조치 사건(백기완 사건 선례)에 대해 ○○○ ○○○이 작성한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회부 의견의 사전심사보고서
7	〃	〃	헌재 내부 정보	긴급조치(백기완) 사건 관련 청구취지, 주심재판관의 전원재판부 회부 가능성 등 사건 정보
8	2015. 9. 15.	○○○	헌재 내부 정보	관습법 사건의 ○○○ 보고의견(각하의견) 및 업무방해 사건의 재판관 의견(○○○ 합헌의견) 등 사건 정보
9	2015. 9. 19.	〃	헌재 내부 정보	○○○ 재판관으로부터 들은 시행령 사건 관련 정보, 제주대 공무원사건 및 조세감면규제법 사건에 대한 헌재 동향, 헌재소장의 한정위헌결정 기속력 명시 입법 추진 등 사건 정보
10	〃	〃	2015. 1. 7.자, 2014헌마760, 2014헌마763 연구보고서	2014헌마760 등 제주대 공무원 사건에 대해 ○○○, ○○○, ○○○ ○○○이 작성한 ‘재심기각결정 취소 인용’ 의견의 연구보고서
11	〃	〃	2013. 1. 5.자, 2013헌마242, 2013헌마497 연구보고서	2013헌마242 등 조세감면규제법 사건에 대해 ○○○ ○○○이 작성한 ‘재심청구 기각판결 및 원행정 처분의 취소 인용’ 의견의 연구보고서
12	2015. 10. 1.	○○○ ○○○	헌재 내부 정보	2014헌바456, 2014헌바457 대법원 규칙 사건에 대한 ○○○ 재판관의 의견, 추가보고서 작성 지시, 추가 검토팀 운영, 향후 일정 등 사건 정보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13	2015. 10. 1.	○○○ ○○○	2015. 6. 30.자, 2014헌마456, 2014헌마457 연구보고서	2014헌마456 등 대법원 규칙 사건에 대해 공동3부 ○○○ ○○○이 작성한 ‘법률조항 합헌, 규칙조항 각하’ 의견의 연구보고서
14	〃	〃	2015. 8. 25.자, 2014헌마456, 2014헌마457 추가보고서	2014헌마456 등 대법원 규칙 사건에 대해 공동3부 ○○○ ○○○이 작성한 추가보고서
15	2015. 10. 4.	○○○	소위 한일협정 관련 사건들	2009헌바317, 2010헌가74, 2011헌바55, 2012헌마 939, 2014헌마888 한일협정 사건 관련 개요, 담당 ○○○의 연구보고서 결과, 선고 일정 등 사건 정보 가 포함된 문건
16	2015. 10. 5.	〃	2011. 12. 12.자, 2011헌바 55 연구보고서	2011헌바55 한일협정 사건에 대해 ○○○ ○○ ○이 작성한 ‘한일협정조항-각하, 법조항-합헌’ 의 견의 연구보고서
17	〃	〃	2011. 11. 14.자, 2009헌바317, 2010헌가74 연구보고서	2009헌바317, 2010헌가74(병합) 한일협정 사건에 대해 ○○○ ○○○이 작성한 ‘합헌’ 의견의 연구보고서
18	〃	〃	2014. 11. 24.자, 2014헌마 888 사전심사보고서	2014헌마888 한일협정 사건에 대해 ○○○ ○○○이 작성한 ‘전원재판부 회부’ 의견의 사전심사보고서
19	〃	〃	2012. 12. 7.자, 2012헌마 939 사전심사보고서	2012헌마939 한일협정 사건에 대해 ○○○ ○○○이 작성한 ‘전원재판부 회부’ 의견의 사전심사보고서
20	〃	○○○	소위 한일협정 관련 사건들	2009헌바317, 2010헌가74, 2011헌바55, 2012헌마 939, 2014헌마888 한일협정 사건 관련 개요, 담당 ○○○의 연구보고서 결과, 선고 일정 등 사건 정보 가 포함된 문건
21	〃	〃	2011. 12. 12.자, 2011헌바 55 연구보고서	2011헌바55 한일협정 사건에 대해 ○○○ ○○ ○이 작성한 ‘한일협정조항-각하, 법조항-합헌’ 의견 의 연구보고서
22	〃	〃	2011. 11. 14.자, 2009헌바317, 2010헌가74 연구보고서	2009헌바317, 2010헌가74(병합) 한일협정 사건에 대해 ○○○ ○○○이 작성한 ‘합헌’ 의견의 연구보고서
23	〃	〃	2014. 11. 24.자, 2014헌마 888 사전심사보고서	2014헌마888 한일협정 사건에 대해 ○○○ ○○○이 작성한 ‘전원재판부 회부’ 의견의 사전심사보고서
24	〃	〃	2012. 12. 7.자, 2012헌마 939 사전심사보고서	2012헌마939 한일협정 사건에 대해 ○○○ ○○○이 작성한 ‘전원 재판부 회부’ 의견의 사전심사보고서
25	〃	〃	현재 내부 정보	한일협정사건 관련 현재 담당 ○○○으로부터 들은 판시 내용 등 사건 정보
26	2015. 10. 16.	○○○	소송절차에 관한 대법원 규 칙의 위임방식과 규정형태	대법원규칙 사건과 관련 ○○○ 판사(현재 파견 중) 가 작성한 ‘소송절차에 관한 대법원 규칙의 위임방 식과 규정형태에 대한 토론 자료
27	2015. 10. 30.	○○○	2015. 9. 2014헌바148 등 7건 연구보고서	2014헌바148 등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에 대해 공동2 부 ○○○ ○○○이 작성한 ‘합헌’ 의견의 연구보 고서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28	2015. 10. 30.	○○○	2015. 6. 2013헌바396, 2014헌바394 연구보고서	2013헌바396 등 관습법 사건에 대해 공동2부 ○○○ ○○○이 작성한 ‘각하’ 의견의 연구보고서
29	〃	〃	2015. 10. 2014헌바180 등 11건 연구보고서	2014헌바180 등 민주화보상법 사건에 대해 ○○○ ○○○이 작성한 ‘합헌’ 의견의 연구보고서
30	2015. 11. 1.	〃	2014. 6. 19.자, 2012헌바66 연구보고서	2012헌바66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공동1부 ○○○ ○○○이 작성한 ‘일부 소극, 일부 한정위헌’ 의견의 연구보고서
31	〃	〃	2009. 12. 21.자, 2009헌바168 연구보고서	2009헌바168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 ○○ ○보가 작성한 ‘합헌’ 의견의 연구보고서
32	〃	〃	2012헌바66 추가보고서	2012헌바66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 ○○ ○이 작성한 추가보고서
33	〃	〃	2015. 5. 12.자, 2012헌바66 추가보고서	2012헌바66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서경미 ○○ ○이 작성한 추가보고서
34	2015. 11. 3.	〃	1998. 5. 97헌바23 연구보고서	97헌바23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 ○○○이 작성한 ‘합헌’ 의견의 연구보고서
35	〃	〃	2005. 3. 3.자, 2003헌바91 연구보고서	2003헌바91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 ○○ ○이 작성한 ‘합헌’ 의견의 연구보고서
36	2015. 11. 10.	〃	2015. 11. 9.자, 2012헌바66 쟁점보고	2012헌바66 업무방해 사건에 대한 ‘기각’ 의견의 쟁점보고서
37	2015. 12. 4.	○○○ ○○○	현재 내부 정보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관련 평의 내용(추정하기 포함), 업무방해 사건 관련 보고 및 추가검토 지시 등 사건 진행 경과
38	〃	〃	2015. 12. 4.자, 2012헌바66 쟁점보고서	2012헌바66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 ○○ ○이 ○○○ 재판관의 지시로 작성한 쟁점보고서
39	〃	〃	2015. 12. 4.자, 2012헌바66 쟁점보고서(수정)	2012헌바66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 ○○○이 ○○○ 재판관의 지시로 작성한 쟁점보고서 수정본
40	〃	〃	2015. 11. 30.자, 2012헌바66 쟁점보고Ⅱ	2012헌바66 업무방해 사건에 대한 정의행위개념 등 추가 쟁점보고서
41	2015. 12. 22.	○○○	2015. 12. 2012헌바66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법무부 의견서	2012헌바66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현재에 제출한 ‘합헌’ 결정을 구하는 의견서
42	〃	〃	2012. 4. 2012헌바66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전주지검 검사 의견서	2012헌바66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법무부장관의 대리인 전주지검 검사가 현재에 제출한 ‘청구 기각’ 결정을 구하는 의견서
43	〃	〃	2015. 7. 8.자, 업무방해에 대한 한정위헌론 검토 보고	2012헌바66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김성주 ○○○(파견 검사)이 ○○○ 재판관의 지시로 작성한 업무방해에 대한 한정위헌론 검토 보고서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44	2015. 12. 22.	○○○	2013. 4. 22.자,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의견 회신	2012헌바66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현재에 의견 회신한 공문(의견없음으로 회신)
45	2016. 1. 18.	〃	현재 내부 정보	민주화보상법 사건, 소멸시효 사건의 합헌의견 보고 완료 사실, 긴급조치위반 손해배상사건 배정 현황(공동 1부 배정) 등 사건 정보
46	2016. 2. 1.	○○○ ○○○	2016. 1. 2012헌바66 쟁점 보고서	2012헌바66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 재판 관의 지시로 ○○○ 판사가 작성한 쟁점보고서
47	2016. 2. 11.	〃	2016. 2. 11. 보고(파일명)	제주대 공무원 사건(2014헌마763), 조세감면규제법 사건(2013헌마496 등 3건), 형사성공보수 사건(2015 헌마784), 시행령 사건(2013헌마403, 450), 긴급조치 사건(2015헌마861 등 다수)의 진행 상황 등 현재 심리 사건 정보
48	〃	〃	2014. 8. 27.자, 2013헌마 496 연구보고서	2013헌마496 조세감면규제법 사건에 대해 관원식 ○○○이 작성한 ‘법원의 재판 및 원행정처분 취소’ 의견의 연구보고서
49	2016. 2. 21.	○○○	2015헌라1 국회선진화법 사건 관련 문건	2015헌라1 국회선진화법 사건(주심 ○○○ 재판관)에 대해 ○○○ 재판관이 다른 재판관 설득용으로 작성한 평의 자료
50	2016. 2. 22.	〃	2015. 1. 30.자, 2015헌라1 청구서	2015헌라1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국회선진화법 사건)의 청구서
51	〃	〃	2015. 7. 21. 접수, 2015헌라1 권한쟁의사건 답변서	2015헌라1 국회선진화법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 국회의장 대리인의 답변서
52	〃	〃	2016. 1. 26. 접수, 2015헌라1 권한쟁의사건 변론 요지서	2015헌라1 국회선진화법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 국회의장 대리인의 변론요지서
53	〃	〃	2015. 7. 16.자,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의견서	2015헌라1 국회선진화법 사건에 대한 기획재정 위원장 정희수의 의견서
54	2016. 2. 24.	〃	2016. 2. 17.자, 2014헌바 180 등 쟁점보고서 - 생활 지원금의 성격 관련	2014헌바180 등 민주화보상법 사건 관련 ○○○ 재판관의 지시로 유경민 ○○○이 작성한 쟁점 보고서
55	2016. 3. 11.	〃	현재 내부 정보	2015헌바382 사건 관련 2015. 12. 담당○○○에게 배정되어 사전심사 중이라는 내용 등 사건정보
56	2016. 3. 16.	이규진 문성호	현재 내부 정보	대법원규칙 사건에 대한 강일원 재판관의 의견, 시행령 사건에 대한 이진성 재판관의 의견 등 현재 심리 사건에 대한 정보
57	〃	〃	현재 내부 정보	대법원규칙 사건에 대한 강일원 재판관의 추가 의견 등 사건 정보
58	〃	○○○	현재 내부 정보	2014헌바456, 457 대법원규칙 사건, 2013헌바403 시행령 사건에 대한 서기석 재판관의 의견 등 사건 정보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59	2016. 3. 17.	○○○ ○○○	현재 내부 정보	2013헌바370 등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이 합헌으로 평의종결 되었다는 평의 결과, 2014헌바456, 457 대법원규칙 사건에 대한 주심인 ○○○ 재판관 등 재판관들의 의견
60	2016. 3. 29.	〃	2016. 3. 28.자,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사건의 주요내용	2016헌마25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접수일, 주심재판관, 사건 요약 내용 등 기재
61	〃	〃	2016. 3. 29.자,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사건의 주요내용	2016헌마263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사건에 대한 접수일, 주심재판관, 사건 요약 내용 등 기재
62	〃	〃	현재 내부 정보	2015헌마94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 검토 의견, 평의 통과, ○○○ 재판관의 재검토 지시 등 사건 정보
63	〃	〃	2009. 3. 18.자, 2007헌마589 관련 메모보고	2007헌마589 사건에 대해 ○○○ ○○○이 ○○○ 재판관의 지시에 따라 평의 자료로 작성한 ‘전면 위헌의견’의 보고서
64	〃	〃	2015. 7. 13.자, 2015헌마182 연구보고서	2015헌마18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 ○○○이 작성한 ‘기각(법률 조항), 각하(헌재결정)’ 의견 연구보고서
65	〃	〃	1996. 8. 1996헌마172 보고서	1996헌마17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에 대한 ○○○ ○○○이 작성한 ‘합헌’ 의견의 보고서
66	〃	〃	2008. 12. 17.자, 2007헌마589 연구보고서	2007헌마589 사건에 대해 ○○○ ○○○이 작성한 ‘대법원 판결 부분 각하, 나머지 부분 기각’ 의견의 연구보고서
67	〃	〃	2016. 3. 2015헌마940 연구 보고서	2015헌마94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 ○○○이 작성한 ‘기각(법률 조항), 각하(나머지 부분)’ 의견의 연구보고서
68	2016. 3. 30.	〃	현재 내부 정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2015헌마940)에 대한 ○○○ 재판관, 담당 ○○○ ○○○의 견해 등 사건 정보
69	〃	〃	2014. 3. 21.자, 2012헌마641 연구보고서	2012헌마64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에 대해 ○○○ ○○○이 작성한 ‘기각(법률조항), 각하(판결취소)’ 의견의 연구보고서
70	2016. 4. 4.	〃	현재 내부 정보	대법원규칙 사건들에 대한 선고 일정, 결정문 초고 내용, 김창중, 조용호, 서기석, 강일원 재판관 들의 견해, 업무방해 사건 등 현재 심리 사건에 대해 강일원 재판관이 최희준에게 얘기한 다른 재판관들의 견해, 현재 심리 중인 2013헌마403 시행령 사건과 관련하여 김창중 재판관으로부터 들은 김창중 재판관 의견, 평의일정, 사건 진행 상황 등 현재 심리 사건에 대한 정보
71	〃	〃	2016. 4. 28.자, 2013헌바396, 2014헌바394 결정문	2013헌바396, 2014헌바394(병합) 관습법 사건에 대한 합헌 결정문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72	2016. 4. 4.	○○○ ○○○	2015. 9. 9.자, 2013헌바 370 등 연구보고서	2013헌바370 등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포괄위임급 지원칙에 위배 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 대해 ○○○ ○○○이 작성한 ‘합헌’ 의견의 연구 보고서
73	〃	〃	2014. 9. 2013헌마403 연구 보고서	2013헌마403 특가법 시행령 제3조 위헌 확인 사건과 관련 ○○○ 재판관의 검토 지시로 직접성 요건에 대해 검토한 ○○○ ○○○ 작성의 연구보고서
74	〃	〃	2015. 6. 29.자, 2013헌마 403 연구보고서	2013헌마403 특가법 시행령 제3조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 ○○○이 ‘기각’ 의견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
75	〃	〃	2014. 9. 2013헌마450 연구 보고서	2013헌마450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6조 등 위헌 확인 사건과 관련하여 ○○○ ○○○이 작성한 ‘각하(법률조항), 기각(시행규칙조항)’ 의견의 연구보고서
76	2016. 4. 6.	〃	2016. 4. 6.자,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사건의 주요내용	2016헌마287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위헌 확인 사건의 청구인, 접수일, 사건요약 내용 등이 기재된 보고서
77	2016. 5. 10.	○○○	현재 내부 정보	2015헌마236 등 4건의 김영란법 사건에 대한 접수 일자, 주심재판관, 쟁점, 청구인 목록, 대리인 등 현재 심리 사건 정보
78	2016. 5. 11.	○○○ ○○○	2016. 5. 11.자,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사건의 주요내용	2016헌마364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확인 사건의 청구인, 접수일, 사건요약 내용 등이 기재된 보고서
79	2016. 5. 13.	○○○	2015. 11. 26.자, 2015헌마 236 등 사건 연구보고서 (병합)	2015헌마236 등 4건의 김영란법 사건에 대해 김현영 ○○○이 작성한 ‘기각 또는 인용’ 의견 및 ‘병합’ 의견 연구보고서
80	2016. 5. 20.	○○○ ○○○	2016. 5. 16.자,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사건의 주요내용	2016헌마383 예산편성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의 청구인, 접수일, 사건요약 내용 등이 기재된 보고서
81	〃	〃	2016. 5. 18.자,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사건의 주요내용	2016헌마388 통신자료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사건의 청구인, 접수일, 사건요약 내용 등이 기재된 보고서
82	2016. 6. 7.	○○○	현재 내부 정보	군형법 사건에 대한 재판관 심증
83	〃	〃	2014. 5. 23.자, 2012헌바 258 연구보고서	2012헌바258 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 ○○○보가 작성한 ‘위헌’ 의견 연구보고서
84	〃	〃	2014. 9. 1.자, 2012헌바 258 쟁점보고	2012헌바258 군형법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 재판관의 검토 지시로 ○○○ ○○○이 작성한 쟁점보고서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85	2016. 6. 7.	○○○	2012헌마258 사건의 ‘쟁점별 위헌성 및 주문’에 관한 보고	2012헌마258 군형법 위헌소원 사건이 죄형법정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
86	〃	〃	2015. 11. 27.자, 2012헌마258 추가보고서	2012헌마258 군형법 사건의 심판대상조항과 관련 하여 ○○○ ○○○이 작성한 추가보고서
87	2016. 6. 9.	○○○ ○○○	현재 내부 정보	2013헌마403 시행령 사건은 ‘평의결과 - 5(직접성 부정 각하 : ○○○, ○○○, ○○○, ○○○, ○○○) : 4(직접성 궁정 분안심사 기각 : ○○○, ○○○, ○○○, ○○○)’로 각하 선고될 예정이라는 사건 정보, 2013헌마450 시행령 사건이 6/23 평의에 넣어 6월말 함께 선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건 정보 등
88	〃	〃	2016. 5. 31.자,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사건의 주요내용	2016헌마44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사건의 청구인, 접수인, 사건요약 정보 등 기재된 보고서
89	〃	〃	2016. 6. 3.자, 2013헌마450 연구보고서(수정)	2013헌마450 시행령 사건(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6조 등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이 작성한 ‘각하’ 의견 연구보고서
90	〃	〃	2012. 9. 4.자, 2012헌마182 연구보고서	2012헌마182 형사소송법 제211조(범죄의 실행중인 자 부분)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이 작성한 ‘기각 또는 각하’ 의견 연구보고서
91	〃	〃	2014. 9. 2013헌마403 직접성 요건 검토보고서	2013헌마403 시행령 사건에 대해 ○○○ ○○○이 ○○○ 재판관의 검토 지시에 따라 검토한 보고서
92	〃	〃	2015. 6. 29.자, 2013헌마403 연구보고서	2013헌마403 특가법 시행령 제3조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 ○○○이 ‘기각’ 의견으로 작성한 연구 보고서
93	〃	〃	2012헌마182 추가보고서	2012헌마182 형사소송법 제211조(범죄의 실행중인 자 부분)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 재판관의 지시에 의해 ‘형법조항에 대한 직접성 요건 인정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 추가보고서
94	〃	〃	파일명 : 명령규칙 형벌조항 직접성 부정판시(○○○)	명령, 규칙 형벌조항의 직접성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직접성 부정판시
95	2016. 7. 7.	〃	현재 내부 정보	긴급조치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토론 내용 등 사건 정보
96	〃	〃	2015헌마861 연구보고서	2015헌마861 긴급조치 사건에 대해 공동1부 이황희, ○○○ ○○○이 작성한 ‘각하(대법원판결)/기각(심판대상조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의견 의 연구보고서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97	2016. 7. 15.	○○○	2015. 6. 1.자, 당해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행정형벌 조항의 심판대상 확정 문제	시행령 사건 관련 ○○○ ○○○이 작성한 ‘당해 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행정형벌조항의 심판대상 확정 문제’에 대한 보고서
98	〃	〃	2013. 6. 19.자, 법령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연구 - 선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선례 분석을 통한 법령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에 대해 ○○○, 우관제, 오영신, 성왕, ○○○ ○○○이 작성한 보고서
99	〃	〃	2016. 6. 13.자, 구두보고 ○○○ ○○○	시행령 사건 관련 직접성의 예외에 대한 임성희 팀장○○○, ○○○, ○○○, ○○○ ○○○ 토의 내용에 대한 구두보고 내용 정리 보고서
100	〃	〃	2016. 6. 10.자, 2013헌마 403 쟁점보고	2013헌마403 시행령 사건과 관련하여 ○○○ ○○○이 ○○○ 재판관의 검토 지시에 의해 작성한 직접성의 예외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쟁점보고서
101	〃	〃	2016. 6. 14.자, 2013헌마 403 쟁점보고	2013헌마403 시행령 사건과 관련하여 형벌조항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에 대한 쟁점보고서
102	〃	〃	1996. 2. 1994헌마213 연구 보고서	1994헌마21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 ○○○이 작성한 ‘일부 각하, 일부 기각’ 의견의 연구보고서
103	2016. 7. 20.	○○○	현재 내부 정보	2012헌바258 균형법 제92조의5(추행죄) 위헌소원 사건의 주심재판관 등 정보와 ○○○ 소장, ○○○, ○○○, ○○○ 재판관 등이 합헌의견이라는 사건 정보
104	〃	〃	현재 내부 정보	계간 관련 균형법 사건(군내 동성간 성추행사건)의 최종 보고서 쟁점 및 보고 내용, 추가 보고 쟁점, 합헌진 쟁점에 관하여 위헌론에서 처리방안으로 검토된 내용 등 사건 정보
105	〃	〃	현재 내부 정보	2016. 7. 20.자 이메일로 보고한 계간 관련 균형법 사건과 관련하여 ‘평등권 침해 여부’는 소극적으로 보고되었다는 사건 정보
106	2016. 7. 22.	〃	현재 내부 정보	2015헌바331 구 법원조직법 제45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의 주심, 청구인, 대리인, 쟁점 및 결론, 토론결과, 발제자와 토론자 대부분이 합헌 의견이라는 내용 등 사건 정보
107	〃	○○○ ○○○	현재 내부 정보	2016헌라1, 4, 6 사건에 대한 주심, ○○○ 배정 현황 등 사건 정보
108	〃	〃	2016. 4. 25.자, 2015헌라3 연구보고서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공동3부 류지현 ○○○이 작성한 ‘각하’ 의견 연구보고서
109	2016. 7. 28.	○○○	2012헌바258 균형법 제92조의 5 위헌소원 사건 결정문 초고	2012헌바258 균형법 제92조의 5 위헌소원 사건 결정문 초고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110	2016. 7. 28.	○○○	2015헌마236, 412, 673(병합) 결정문 초고	2015헌마236, 412, 67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사건(김영란법 사건)의 결정문 초고
111	〃	○○○	2012헌바258 균형법 제92조의 5 위헌소원 사건 결정문 초고	2012헌바258 균형법 제92조의 5 위헌소원 사건 결정문 초고
112	〃	〃	2015헌마236, 412, 673(병합) 결정문 초고	2015헌마236, 412, 67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사건(김영란법 사건)의 결정문 초고
113	2016. 7. 28.	○○○ ○○○	현재 내부 정보	균형법사건 관련 재판관들의 의견(동성간의 수행은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등 사건 정보
114	〃	〃	현재 내부 정보	균형법사건 관련 ○○○ 재판관의 의견, ○○○이 ○○○ 재판관에게 전달한 사항 등 사건 정보
115	2016. 7. 29.	〃	현재 내부 정보	2013헌마713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이 전원부 심리 중이라는 사실과 보고○○○이 작성한 보고 내용의 개요, 의견 등 사건 정보
116	〃	〃	현재 내부 정보	2016헌라7 사건과 관련사건인 2015헌라6, 2016 헌라3 사건 등의 변론 예정, ○○○ 주심재판관의 각하 결정 견해, 담당 ○○○의 처리 일정 관련 내용 등 사건 정보
117	〃	〃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의 주요내용	2016헌라7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 쟁의 사건의 청구인, 피청구인, 접수인, 사건요약 내용 등 기재된 보고서
118	2016. 8. 17.	〃	현재 내부 정보	매립지 등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토론시 지성수 부장○○○의 발언 내용 등 사건 정보
119	2016. 9. 19.	○○○	현재 내부 정보	김정원 선임부장으로부터 들은 제주대 공무원 사건 관련 김정원 부장의 출구전략에 관한 보고서 관련 내용과 이에 대한 재판관의 반응 등 사건 정보
120	〃	〃	위헌결정의 효력과 제심 절차의 관계 - 한정위헌 결정을 중심으로	2014헌마760, 763 제주대 공무원 사건에 대해 이진성 재판관의 지시로 김정원 선임부장연구관이 작성한 '위헌결정의 효력과 제심절차의 관계(한정 위헌결정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121	〃	〃	제주대 공무원 사건 관련 보고서 일부(JPG파일 2개)	제주대 공무원 사건 관련 출구전략 관련 보고서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122	2016. 9. 30.	○○○ ○○○	이 사건 규칙조항의 직접성 인정 여부에 관한 추가 보고서	2013헌마403 등 시행령 사건에 대해 ○○○ ○○○이 작성한 규칙조항의 직접성 인정 여부에 관한 추가보고서
123	〃	〃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의 주요 내용	2016헌마82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청와대의 KBS보도 개입 관련)에 대한 청구인, 피청구인, 접수인, 사건요약 내용 등이 기재된 보고서
124	〃	〃	2016. 9. 30.자, 2013헌마 450 쟁점보고서	2013헌마450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인정 여부 (소극) 관점에서 작성한 쟁점보고서
125	〃	〃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의 주요 내용	2016헌라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김재수 동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처리 관련)에 대한 청구인, 피청구인, 접수인, 사건요약 내용 등이 기재된 보고서
126	〃	〃	현재 내부 정보	2013헌마450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서기석 재판관의 견해 등 사건정보
127	2016. 10. 4.	〃	2016. 10. 4.자, 2013헌마 403 쟁점보고	2013헌마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 부장 ○○○이 작성한 쟁점보고서
128	2016. 10. 7.	〃	현재 내부 정보	2013헌마450, 2013헌마403 시행령 사건에 관한 평의내용 등 사건 정보
129	〃	〃	2016. 9. 26. 접수, 2015헌라 3 변론요지서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의 대리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
130	2016. 10. 10.	〃	현재 계류중인 주요사건 현황	2011헌바118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진정입법부작위위헌 등 총 37건의 사건번호, 사건명, 추심채판관, 접수일, 주체어 등이 기재된 사건 현황 보고서
131	2016. 10. 13.	〃	현재 내부 정보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변론 진행 경과 및 재판관별 주요 질문과 답변 내용 등 사건 정보
132	2016. 10. 17.	○○○ ○○○	현재 내부 정보	백남기 부검영장 사건에 대한 박한철 소장의 의견 등 사건 정보
133	〃	〃	2016. 10. 13. 접수, 2016 헌마891 청구서	2016헌마891 백남기 부검영장 사건에 대한 헌법 소원 청구서
134	〃	〃	현재 내부 정보	백남기 부검영장 사건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강일원 재판관의 의견 등 사건 정보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135	2016. 10. 17.	○○○ ○○○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의 주요내용	2016헌마891 압수수색검증영장 위헌확인 사건 (백남기 사건)의 청구인, 피청구인, 접수인, 사건 요약 내용 등이 기재된 보고서
136	2016. 10. 18.	〃	현재 내부 정보	2016헌가10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선고 예정일, 선고 결과, 결정문 주문 등 사건 정보
137	〃	〃	현재 내부 정보	2013헌마450 시행령 사건에 대한 주문(수산자원 관리법 제18조는 각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는 기각 - 전원일치) 등 사건 정보
138	2016. 10. 19.	〃	현재 내부 정보	백남기 부검영장 사건과 관련하여 강일원 재판관 의견 및 평의일정 등 사건 정보
139	2016. 10. 26.	○○○	사건요약	2015헌라3, 2016헌라1, 2016헌라4 매립지 사건의 개요, 청구 이유 등이 기재된 요약보고서
140	〃	〃	2016. 2. 16.자, 답변서	2016헌라1 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피청구인 부안군의 소송대리인이 작성한 답변서
141	〃	〃	2016. 8. 17.자, 답변서	2016헌라6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피청구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소송대리인이 작성한 답변서
142	2016. 11. 1.	〃	현재 내부 정보	병역법 사건,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제주대 남정만 사건 등의 평의 일정, 병역법 사건 관련 ○○○ 재판관의 의견, 제주대 남정만 사건에 대해 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입장이 ○○○, ○○○ 재판관의 의견이라는 내용 등 다수의 사건 정보
143	〃	〃	2013. 10. 2012헌가17 등 연구보고서	2012헌가17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등에 대해 이영광 ○○○이 작성한 '각하(제2국민역 편입조항), 각하 또는 합헌(병역종류조항), 합헌(처벌조항)' 의견의 연구보고서
144	〃	〃	2015. 3. 20.자, 2011헌바 118 등 추가보고서	2011헌바118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에 대해 공동1부 서경미 ○○○이 '심판대상 정리 및 추가서면 내용 요약, 입법례 조사보완' 하여 작성한 추가보고서
145	〃	〃	2015. 8. 11.자, 2011헌바 118 등 추가보고서	2011헌바118 등 사건에 대해 ○○○ 재판관의 지시로 황지섭 ○○○이 '병역종류조항의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작성한 추가보고서
146	〃	〃	JPG 파일 3개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 중 이유에서 효력범위를 제한한 경우'에 대한 보고서
147	2016. 11. 10.	〃	현재 내부 정보	2015헌가28 변론 경과 및 선고 일정 등 사건 정보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148	2016. 11. 10.	○○○	2016. 10. 28.자, 2015가합28 참고인 의견서	2015가합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제23조 제1호 위헌 제청 사건에 대해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성용 교수가 작성한 참고인 의견서
149	〃	〃	2016. 11. 7. 접수, 2015헌가28 준비서면	2015헌가28 사건에 대해 이해관계인 경찰청장의 대리인 정부법무공단에서 작성한 준비서면
150	〃	〃	2016. 10. 19. 접수, 2015가합28 변론요지서	2015가합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호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이 작성한 변론요지서
151	2016. 11. 22.	〃	현재 내부 정보	2013헌마403 시행령 사건에 대한 ○○○ 재판관의 심증(각하 의견), 평의 결과 등 사건 정보
152	〃	〃	현재 내부 정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의 형사소송법 전문 법칙 적용 여부 등에 대한 현재 내부 동향
153	〃	〃	탄핵사건심리절차 참고자료 - 2004헌나1관련	2004헌나1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과 관련된 '탄핵사건 심리절차 선례참고'라는 자료
154	2016. 11. 28.	○○○	2013헌마403 결정문(초고)	2013헌마403 특가법 시행령 사건의 결정문 초고
155	2016. 12. 14.	○○○	현재 내부 정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관련 ○○○ 재판관의 증인신문 절차 관련 지시사항, 형소법 준용범위에 관한 내부 회의 예정 등 사건 정보
156	2016. 12. 16.	〃	2016. 12. 16. 접수, 변호인 선임신고서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변호인선임 신고서
157	〃	〃	2016. 12. 16.자, 이의신청서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에 대해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작성한 이의신청서
158	2016. 12. 22.	〃	현재 내부 정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관련 2016. 12. 22. 14:00 진행된 제1회 변론준비기일 진행 내용 등 사건 정보
159	〃	〃	2016. 12. 19. 접수, 2016헌나1 준비절차기일 지정에 대한 의견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에 대해 피청구인들의 변호인이 작성한 준비절차기일 지정에 대한 의견서
160	〃	〃	2016. 12. 20.자, 준비절차기일 출석 요구 공문	2016헌나1 사건 관련 청구인 대리인, 피청구인 대리인 등에게 보내는 출석 요구 공문
161	〃	〃	2016. 12. 20.자, 준비절차기일 통지 공문	2016헌나1 사건 관련 대통령,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등에게 보내는 준비절차기일 통지 공문
162	〃	〃	2016. 12. 21. 접수, 담당 변호사 지정서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담당변호사 지정서
163	〃	〃	2016. 12. 21.자,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서	2016헌나1 사건 관련 피청구인의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서
164	〃	〃	2016. 12. 21. 접수, 소송 위임장	2016헌나1 사건 관련 피청구인의 소송위임장(법무 법인 에이치스)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165	2016. 12. 22.	○○○	2016. 12. 21.자, 변호인선임 신청서	2016헌나1 사건 관련 피청구인의 변호인 선임신청 고서(변호사 이상용)
166	〃	〃	2016. 12. 21. 접수, 소송 위임장	2016헌나1 사건 관련 소송위임장(범무법인 율진)
167	〃	〃	2016. 12. 21. 접수, 대통령(박근혜) 탄핵사건 수행자(추가)선임서 등	2016헌나1 사건 관련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제출 대통령 탄핵사건 수행자(추가)선임서 등
168	〃	〃	2016. 12. 21.자,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	2016헌나1 사건 관련 청구인의 대리인이 제출한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
169	〃	〃	2016. 12. 21.자, 준비서면	2016헌나1 사건 관련 청구인의 대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170	〃	〃	2016. 12. 21. 접수, 입증계획	2016헌나1 사건 관련 피청구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입증계획
171	〃	〃	2016. 12. 22. 접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2016. 12. 7.자 제346회 국회(정기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임시회의록)
172	〃	〃	2016. 12. 22. 접수, 월간조선 등 사본	2016헌나1 사건 관련 강제49호증~1로 제출된 자료
173	〃	〃	2016. 12. 22.자, 서증제출서	2016헌나1 사건 관련 청구인의 대리인이 제출한 서증제출서
174	2017. 1. 23.	〃	현재 내부 정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관련 증인신문 일정 등 사건 정보
175	〃	〃	2017. 1. 23.자, 준비서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관련 청구인의 대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헌법을 위배한 권력적 사실행위의 관점)
176	〃	〃	2017. 1. 19.자,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 공문	2016헌나1 사건 관련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송부한 사실조회 회보 공문(미르 재단 출연 관련 증빙자료 등)
177	〃	〃	2017. 1. 23. 접수, 증인 차은택에 대한 피청구인신문사항	2016헌나1 사건 관련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제출한 증인 차은택에 대한 증인신문사항
178	〃	〃	2017. 1. 20.자, 증인(류상영) 소제탐지촉탁 결과 회신 공문	2016헌나1 사건 관련 서울성동경찰서에서 제출한 증인(류상영) 소제탐지촉탁 결과 회신 공문
179	〃	〃	2017. 1. 20.자, 증인(○○○) 소제탐지촉탁 결과 회신 공문	2016헌나1 사건 관련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제출한 증인(○○○) 소제탐지촉탁 결과 회신 공문
180	〃	〃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변론기일 녹취서	2016헌나1 사건의 변론기일 녹취서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181	2017. 1. 25.	○○○	현재 내부 정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관련 추가 증인신청, 최종 선고 예정일 등 사건 정보
182	〃	〃	현재 내부 정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의 증인신문 기일 지정 내용, 선임부장으로부터 전해 들은 인용여부 및 선 고기일 등 사건 정보
183	〃	〃	2017. 1. 25. 접수, 증인 유진룡에 대한 신문사항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관련 증인 유진룡에 대한 신문사항(청구인 제출)
184	〃	〃	2017. 1. 25. 접수, 증인 ○○○에 대한 신문사항 및 증인 류상영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2016헌나1 사건 관련 증인 ○○○에 대한 신문 사항 및 증인 류상영에 대한 반대신문사항(청구인 제출)
185	〃	〃	2017. 1. 25. 접수, 준비서면 - 차은택 증언 관련	2016헌나1 사건 관련 청구인의 대리인이 제출한 차은택 증언 관련 준비서면
186	〃	〃	2017. 1. 25. 접수, 준비서면 - 피청구인의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	2016헌나1 사건 관련 청구인의 대리인이 제출한 피청구인의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 관련 준비서면
187	〃	〃	2017. 1. 25. 접수, 증인 유진룡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2016헌나1 사건 관련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제출한 증인 유진룡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188	〃	〃	2017. 1. 20.자, 사실조회 공문	롯데면세점에서 제출한 사실조회 회보 공문(전경 련으로부터 미르 출연 요구 있었는지 여부 등)
189	〃	〃	2017. 1. 20.자,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관련한 2016. 1. 11.자 사실 조회에 대한 회신 공문	GS. EPS에서 제출한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관련한 2016. 1. 11.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공문(재단법인 미르와 관련된 출연 요구가 전경경제인연합회로부터 있었는지 여부)
190	〃	〃	2017. 1. 24. 접수, 사실조회 회신 공문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에서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 공문(재단법인 케이스포츠와 관련된 출연 요구가 전경련으로부터 있었는지 여부)
191	〃	〃	현재 내부 정보	변론기일에서 증인 채택여부, 재판관들의 추가 증인 채택 정보 등 사건 정보
192	2017. 2. 16.	〃	2017. 2. 8.자,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신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관련 현재의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회신 공문 (2016. 11. 7. 류상영 임의제출 녹취파일의 녹취록)
193	〃	〃	2017. 2. 10.자, 문서송부 촉탁에 관한 회신	2016헌나1 사건 관련 현재의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회신 공문(류상영이 임의제출한 ○○○ 컴퓨터 내 녹취파일 일체)

별지 목록 (2)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자료 유출 내역(사건 외 동향)’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1	2015. 11. 24.	○○○	지정토론문(○○○)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문(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교수의 지정토론문)
2	〃	〃	지정토론문(○○○)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문(○○○의 지정토론문)
3	〃	〃	지정토론문(○○○ ○○○)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문(책임○○○ ○○○의 지정토론문)
4	2015. 11. 26.	○○○ ○○○ ○○○	2015. 11. 26.자, 오늘자 서울신문 보도 관련 검토	통진당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관련 전주 지법 판결 내용을 법원행정처에서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서울신문 의혹 보도에 대해 ○○○이 법원행정처의 입장 등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 하여 현재소장에게 보고한 보고서
5	2016. 3. 9.	○○○	2016. 2. 1.자, 백송 포럼 자료	2016. 2. 1.자 헌법재판소 주요 행사 및 업무현황, 전월 회의 조치결과, 토의안건 등 기재
6	〃	〃	2016. 3. 7.자, 백송 포럼 자료	2016. 3. 7.자 헌법재판소 주요 행사 및 업무현황, 전월 회의 조치결과, 토의안건 등 기재
7	2016. 3. 22.	○○○	현재 내부 정보	2016. 3. 18.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 에서의 ○○○ 현재소장의 발언 배경 등 현재 내부 동향
8	〃	〃	2016. 1.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헌법재판소사무처에서 작성한 주요업무 추진방향, 역점 추진 사업 등 2016년도 현재 주요 업무 계획 등 기재
9	〃	〃	2016. 1. 1월 월례회의자료 (헌법재판연구원)	2016. 1. 헌법재판연구원 월례회의자료로 각 팀별 전월 실적 및 현월 추진계획 등 기재
10	〃	〃	2016. 2. 2월 월례회의자료 (헌법재판연구원)	2016. 2. 헌법재판연구원 월례회의자료로 각 팀별 전월 실적 및 현월 추진계획 등 기재
11	〃	〃	2016. 3. 3월 월례회의자료 (헌법재판연구원)	2016. 3. 헌법재판연구원 월례회의자료로 각 팀별 전월 실적 및 현월 추진계획 등 기재
12	〃	〃	2016. 1. 2월 실국장회의 자료	헌법재판소사무처에서 작성한 2016. 2. 각 부서별 업무추진 계획 등 기재
13	〃	〃	2016. 3. 4.자, 3월 실국장 회의 자료	헌법재판소사무처에서 작성한 2016. 3. 각 부서별 업무추진 계획 등 기재
14	〃	〃	2016. 2. 1.자, 2월 백송 포럼 자료	2016. 2. 헌법재판소 주요 행사 및 업무현황, 전월 회의 조치결과, 토의안건 등 기재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15	2016. 3. 22.	○○○	2016. 3. 7.자, 3월 백송 포럼 자료	2016. 3. 헌법재판소 주요 행사 및 업무현황, 전월 회의 조치결과, 토의안건 등 기재
16	2016. 4. 1.	○○○ ○○○	2016. 4. 1.자, 2016년 4월 백송 포럼 자료	2016. 4. 헌법재판소 주요 행사 및 업무현황, 전월 회의 조치결과, 토의안건 등 기재
17	〃	〃	2016. 3. 30.자, 4월 실국장 회의 자료	헌법재판소사무처에서 작성한 2016. 4. 각 부서별 업무추진 계획 등 기재
18	〃	〃	2016. 4. 2016년 4월 월례 회의자료(헌법재판연구원)	2016. 4. 헌법재판연구원 월례회의자료로 각 팀별 전월 실적 및 현월 추진계획 등 기재
19	2016. 5. 2.	〃	2016. 4. 25.자, 5월 실국장 회의 자료	헌법재판소사무처에서 작성한 2016. 5. 각 부서별 업무추진 계획 등 기재
20	〃	〃	2016. 5. 2016년 5월 월례 회의자료(헌법재판연구원)	2016. 5. 헌법재판연구원 월례회의자료로 각 팀별 전월 실적 및 현월 추진계획 등 기재
21	2016. 5. 9.	〃	2016. 5. 2.자, 2016년 5월 백송 포럼 자료	2016. 5. 헌법재판소 주요 행사 및 업무현황, 토의안건, 2017년도 예산 신규사업 목록 등 기재
22	2016. 6. 9.	〃	2016. 6. 7.자, 6월 실국장 회의 자료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작성한 2016. 6. 각 부서별 업무추진 계획 등 기재
23	〃	〃	2016. 6. 2016년 6월 월례 회의자료(헌법재판연구원)	2016. 6. 헌법재판연구원 월례회의자료로 각 팀별 전월 실적 및 현월 추진계획 등 기재
24	2016. 7. 2.	이규진	헌재 내부 정보	김정원 선임부장으로부터 들은 차기 헌재소장에 관한 정보, 헌법재판관의 헌재소장 지명시 잔여 임기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개정 관련 헌재 내부 등향
25	2016. 7. 11.	○○○ ○○○	2016. 7. 5.자, 7월 실국장 회의 자료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작성한 2016. 7. 각 부서별 업무추진 계획 등 기재
26	〃	〃	2016. 7. 2016년 7월 월례 회의자료(헌법재판연구원)	2016. 7. 헌법재판연구원 월례회의자료로 각 팀별 전월 실적 및 현월 추진계획 등 기재
27	〃	〃	2016. 7. 6.자, 2016년 7월 백송 포럼 자료	2016. 7. 헌재 주요행사 및 업무현황, 전월회의 조치결과, 토의안건 등 기재
28	2016. 7. 15.	○○○	국회 개헌안과 헌법재판소 개선의견 비교	국회개헌안(2014. 5.)과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개선의견(2009. 1.) 비교 문건
29	〃	〃	2005. 11. 30. 발행,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헌법재판소에서 서울대 법과대학 김문현 교수 등 4명에게 의뢰하여 작성된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보고서
30	〃	〃	2009. 1.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개선의견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작성한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개선의견' 보고서(국회 송부용)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31	2016. 7. 15.	○○○	재판관의 자격 및 구성 관련 의견 제출 현황(처장보고)	재판관의 자격 및 구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 현황, 연구용역보고서 현황, 국회 보고서 현황’ 등이 기재된 보고서
32	〃	〃	재판관 관련 국회제출 자료	‘재판관 정수,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재판관 임 기’ 등에 대한 국회 질의 등과 관련된 자료 제출 현황 및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
33	〃	〃	파일명 : 재판관정수(증원) 관련 예상질의(○○○ ○○○ 수정)	○○○ ○○○이 수정한 재판관 정수(증원) 관련 국회 예상질의 및 답변자료
34	〃	〃	파일명 : 발제문종합(기본권 최종)	기본권 관련 발제문
35	〃	〃	쟁점별 제출시기 결정 - 기본권편	개헌 관련 쟁점별 국회 자료 제출 시기를 검토한 보고서(기본권편)
36	〃	〃	기본권 TF 활동 내역 보고	2008. 9. 18.~11. 20. 기간 동안의 기본권 TF 활동 내역 보고서
37	〃	〃	2008. 12. 헌법재판제도 개헌 검토 보고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작성한 ‘헌법재판의 본질과 헌법재판소의 지위, 입법자와 헌법재판소 의 관계,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등에 대한 개헌 검토 보고서
38	〃	〃	쟁점별 제출시기 결정	개헌 관련 쟁점별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시기를 검토한 보고서
39	〃	〃	의견표명 여부 및 그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고려사항	개헌 관련 대 국회 상대 의견 표명 여부 및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검토 보고서
40	〃	〃	조항별 현행규정 및 쟁점 사항 검토	개헌 관련 조항별 현행규정 및 쟁점사항 검토 보고서
41	〃	〃	헌법재판의 본질과 헌법 재판소의 지위	헌법재판의 본질과 헌법재판소의 지위에 대해 ○○○ ○○○보가 작성한 검토 보고서
42	〃	〃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의 개헌논의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의 개헌 논의와 관련하여 김진한 ○○○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
43	〃	〃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에 대해 ○○○ ○○○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
44	〃	〃	입법자와 헌법재판소의 관계	입법자와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대해 이황희 ○○ ○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
45	〃	〃	2008. 7. 14.자, 헌법개정에 대비한 우리 재판소의 대응 전략	헌법 개정과 관련한 현재의 대응 전략에 대해 제도기획과에서 검토한 보고서로 세부실천계획, TF팀 상세 운영계획 등 기재
46	〃	〃	2011. 3. 대법원의 흡수통합론에 대한 대응 방안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 제도기획과에서 작성한 대법원의 흡수통합론에 대한 대응 방안 보고서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47	2016. 7. 15.	○○○	헌법 개정 대응전략 및 추진계획	대법원 통합론에 대한 각계의 동향, 통합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대응전략, 상반기 세부 추진 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는 보고서
48	〃	〃	2011. 2. 현재 흡수통합론에 대한 대응 기본계획	대법원의 헌법재판소 통합론 제기, 통합론에 대한 재판소의 대응전략, 상반기 세부 추진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는 보고서
49	〃	〃	‘붙임 1. 관련 언론기사 요약’ 등	헌법개정 대응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서에 첨부 되는 개헌 관련 언론기사를 요약한 내부 문건 등
50	〃	〃	2008. 7. 15.자, 개헌 관련 책자 요약 -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헌법재판소 제도기획과에서 작성한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라는 개헌 관련 책자를 요약한 내부 문건
51	〃	〃	2008. 6. 헌법개정에 대비한 우리 재판소의 대응전략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 제도기획과에서 작성한 헌법개정에 대비한 헌법재판소의 대응 전략이 기재된 보고서
52	〃	〃	2010. 2. 19.자, 헌법학 교과서의 헌법재판에 대한 경향 분석	헌법재판소 제도기획과에서 작성한 헌법학 교과서의 헌법재판에 대한 경향 분석 보고서
53	〃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통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통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서 (헌법재판소 설립 배경, 헌법재판소-대법원 권한 갈등에 대한 의견 등 기재)
54	〃	〃	2013.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제출용으로 작성한 헌법재판소법 개정 관련 개정의견 등 기재 문건
55	〃	〃	2015. 12. 개헌 대비 기초자료집	헌법재판소에서 작성한 개헌 대비 기초자료집
56	〃	〃	2015. 7. 헌법재판제도 개선 자료 조사집(2010 ~ 2014)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작성한 헌법재판제도 개선 자료 조사집(2010 ~ 2014)
57	〃	〃	2015. 12. 2015년도 헌법 개정관련 자료집	헌법재판소에서 작성한 헌법 개정관련 자료집
58	〃	〃	개헌대비 기초자료집 발간 계획	개헌대비 기초자료집 발간 계획의 목적, 수록 내용, 소요 예산안(100천원내외) 등의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
59	〃	〃	2015. 9. 11.자, 2015년도 국정감사 업무현황	헌법재판소에서 작성한 2015년도 국정감사 업무 현황 자료
60	〃	〃	2015. 9. 11.자, 2015년도 국정감사 예상질의·답변자료(심판사무)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작성한 2015년도 국정감사 심판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예상질의·답변자료
61	〃	〃	2015. 9. 11.자, 국정감사 대비 예상질의·답변자료 (일반운영)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작성한 2015년도 국정감사 대비 일반운영 분야 예상질의·답변자료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62	2016. 7. 15.	○○○	2016. 임시국회 대비 예상 질의·답변자료(일반운영)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작성한 2016년도 임시국회 대비 일반운영 분야 예상질의·답변자료
63	〃	〃	2016. 임시국회 대비 예상 질의·답변자료(일반운영) 법제연구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작성한 2016년도 임시국회 대비 일반운영 분야 예상질의·답변자료
64	〃	〃	파일명 : 16년도 임시국회 업무현황(주요성과, 추진 계획) 법제연구과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65	〃	〃	파일명 : 임시국회 업무현황 (주요성과, 추진계획), 연구 파트 추가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66	〃	〃	예상질의·답변자료(심판사무)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작성한 심판사무에 대한 예상질의·답변자료
67	〃	〃	2016. 6. 29.자, 임시국회 대비 예상질의·답변자료 (일반운영)	임시국회 대비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작성한 일반운영 분야 예상질의·답변자료
68	〃	〃	제343회 국회(임시회) 업무 현황보고 인사말씀	제343회 임시국회 업무현황보고 관련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인사말씀
69	〃	〃	2016. 6. 29.자, 임시국회 대비 주요결정사건(2016. 6. 29. 현재)	임시국회에 대비하여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작 성한 주요 결정 사건 보고서(사건명, 선고, 주심, 제청요지, 결정요지 등 기재)
70	〃	〃	2016. 6. 29.자, 임시국회 대비 주요쟁점사항(2016. 6. 29. 현재)	임시국회에 대비하여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작 성한 현재 계속 사건, 결정사건 등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보고서
71	〃	〃	파일명 : 답변서 김진태 (개헌 관련 연구용역 6.21.)	법제연구과 ○○○ 서기관이 작성한 개헌 관련 연구 용역 수행 내역에 대한 답변서
72	〃	〃	파일명 : 답변서 백혜련 (연구용역 6.20.)	법제연구과 ○○○ 사무관이 작성한 연구과제 및 세 미나 내역에 대한 답변서
73	〃	〃	파일명 : 답변 주광덕(연구 용역 6.21.)	법제연구과 ○○○ 사무관이 작성한 최근 3년간 (2013 ~ 2016년 최근까지) 연구용역 현황(리스트) 관련 답변서
74	〃	〃	파일명 : 답변서 _ 주승용 (권위적인 법령용어 정비 계 획)	법제연구과 ○○○ 서기관이 작성한 권위적인 법령 용어 정비 계획에 대한 답변서
75	〃	〃	파일명 : 답변서 _ 홍일표 (제19대 국회 제출 법안 처리 현황 및 20대 국회 법안제출 계획)	법제연구과 ○○○ 서기관이 작성한 제19대 국회 제출 법안 처리 현황 및 제20대 국회 법안제출 계획에 대한 답변서
76	〃	〃	파일명 : 답변서 - 금태섭 (대법원과의 통합)	대법원과의 통합에 대한 금태섭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77	2016. 7. 15.	○○○	파일명 : 답변서 - 김진태 위원(상시청문회법등)	법제연구과 ○○○ 서기관이 작성한 상시 청문 회법, 위헌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입장, 누리과정 시행령에 대한 위헌 논란에 대한 입장에 대한 답변서
78	〃	〃	파일명 : 답변서 - 김진태 (연구용역 6.21.)	법제연구과 ○○○ 사무관이 작성한 최근 3년 연구용역 리스트에 대한 문건
79	〃	〃	파일명 : 답변서 - 정성호 (재판소법개정건의 등)	법제연구과 ○○○ 서기관이 작성한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건 관련 답변서
80	〃	〃	파일명 : 답변서 - 주광덕 의원(6.22.)	재정기획과 ○○○ 사무관이 작성한 최근 3년간 (2013-2016년 최근까지) 주요사업비 현황에 대한 답변서
81	〃	〃	파일명 : 답변 김진태(누리 과정)	법제연구과 ○○○ 서기관이 작성한 시행령도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법령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서
82	〃	〃	파일명 : 답변 박범계(재판부 보수화 등)	법제연구과 ○○○ 서기관이 작성한 헌법재판소의 재판부 인적 구성이 보수화 되어 보수적 결정이 많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서
83	〃	〃	파일명 : 답변 오신환(재판관 임기 연장)	법제연구과 ○○○ 서기관이 작성한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필요성 검토에 대한 현재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서
84	〃	〃	파일명 : 답변 이용주(헌법 재판소법 개정)	법제연구과 ○○○ 서기관이 작성한 ‘헌법재판 소장 임기 관련’ 질문 등에 대한 답변서
85	〃	〃	파일명 : 답변 정갑윤(개헌 관련 견해)	법제연구과 ○○○ 서기관이 작성한 ‘헌법개정과 관련한 현재의 견해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서
86	〃	〃	파일명 : 답변 정성호(변형 결정, 재판소원)	법제연구과 ○○○ 서기관이 작성한 ‘변형결정 의 합법성/정당성이 논란이 되어 왔는데, 변형 결정은 불가피한가’라는 질문 등에 대한 답변서
87	〃	〃	파일명 : 답변 정성호(헌법 재판소법개정건의 입안 경과)	법제연구과 ○○○ 서기관이 작성한 ‘헌법재판 소법 개정의견 등 입안 경과’ 등에 대한 답변서
88	〃	〃	파일명 : 답변서 - 이춘석 (상시청문회법)	법제연구과 ○○○ 서기관이 작성한 ‘국회법(상시 청문회법) 관련 현재의 의견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서
89	〃	〃	2016. 7. 결산규칙(헌법 개정건의 입안 경과)	2016. 7. 결산규칙(헌법 개정건의 입안 경과) 등에 대한 답변서
90	〃	〃	파일명 : 헌법개정규정검토	제6장 헌법재판소 관련, 헌법해석 관련 부분에 대한 현행 규정, 개정규정, 필요성 등을 검토한 보고서
91	〃	〃	현행 헌법상 개정필요 규정 검토	현행 헌법상 개정 필요 규정인 제6장 헌법재판소 관련, 헌법해석 관련 부분에 대한 현행 규정, 개정 규정, 필요성 등을 검토한 보고서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92	2016. 7. 15.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흡수 통합 관련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흡수통합 관련, 언론기사, 헌법재판소 대응 논리 등 기재 보고서
93	〃	〃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관련 보고	2013. 9. 6. 개최된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관련 보고서
94	〃	〃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 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2013. 9. 6. 개최된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결과 보고서로 예산집행 내역, 주요보고 사항 등의 내용 기재
95	〃	〃	2013. 9. 6.자, 헌법 및 헌법 재판 발전연구위원회 회의록	2013. 9. 6. 개최된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 위원회 회의록
96	〃	〃	2013. 9. 6.자, 헌법 및 헌법 재판 발전연구위원회	2013. 9. 6. 개최된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 위원회 회의 녹취록
97	〃	〃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관련 진행상황 보고	2013. 11. 21. 개최된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관련 진행상황 보고서
98	〃	〃	2013. 11. 21.자,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2013. 11. 21. 개최된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 위원회 회의 녹취록
99	〃	〃	2013. 11. 21.자, 헌법 및 헌법 재판 발전연구위원회 회의록	2013. 11. 21. 개최된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 위원회 회의록
100	〃	〃	헌법 전문가 총강의 구성 및 체계적 정합성 고찰	건국대학교 ○○○ 교수가 작성한 ‘헌법 전문가 총강의 구성 및 체계적 정합성 고찰’이라는 주제의 보고서
101	〃	〃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에 관한 연구(○○○ 위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 교수가 작성한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의 보고서
102	〃	〃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에 관한 연구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 교수가 작성한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의 보고서 재수정본
103	〃	〃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에 관한 연구(요약)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 교수가 작성한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의 보고서 요약본
104	〃	〃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 기관의 ○○화와 헌법 제107조 제2항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초안)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 교수가 작성한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기관의 ○○화와 헌법 제107조 제2항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초안)
105	〃	〃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 기관의 ○○화와 헌법 제 107조 제2항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초안)요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 교수가 작성한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기관의 ○○화와 헌법 제107조 제2항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초안)요지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106	2016. 7. 15.	○○○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기관의 ○○화와 헌법 제107조 제2항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 교수가 작성한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기관의 ○○화와 헌법 제107조 제2항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
107	〃	〃	선거소송의 본질과 관할에 관한 소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 교수가 작성한 '선거소송의 본질과 관할에 관한 소고'라는 주제의 보고서
108	〃	〃	선거소송의 본질과 관할에 관한 소고[요약]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 교수가 작성한 '선거소송의 본질과 관할에 관한 소고'라는 주제의 보고서 요약본
109	〃	〃	선거소송의 본질과 관할	선거소송의 본질과 관할(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에 대한 연구보고서
110	〃	〃	2013. 12. 11.자,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회의록	2013. 12. 11. 개최된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회의록
111	〃	〃	2013. 12. 11.자,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제2소위원회	2013. 12. 11. 개최된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제2소위원회 회의의 녹취록
112	〃	〃	2013. 12. 2013년도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결과보고서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의 개요, 운영 경과, 활동 결과 등이 기재된 조사연구 결과보고서
113	2016. 7. 20.	○○○	집회 및 시위에서의 복면착용금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집회 및 시위에서의 복면착용금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캐나다 및 미국을 중심으로) 최종보고서
114	2016. 8. 8.	○○○ ○○○	2016. 7. 29.자, 실국장 회의 자료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작성한 2016. 8. 실국장 회의자료
115	〃	〃	2016. 8. 월례회의자료(헌법 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2016. 8. 월례회의자료 각 팀별 전월 추진실적, 당월 추진계획 등 기재
116	2016. 8. 22.	〃	헌재 내부 정보	신임 헌재 연구위원 내정자 명단, 재판소장과 비서실장이 참석 예정인 변호사 대회에 참석할 계획이라는 헌재 내부 동향
117	2016. 9. 2.	〃	헌재 내부 정보	헌재소장이 부장, 팀장을 소집하여 주재한 회의의 내용 등 헌재 동향
118	〃	〃	2016. 8. 제2회 열린 헌법 재판소 국민초청행사 세부 시행 계획(안)	헌법재판소 총무과에서 작성한 2016. 8. 31.-9. 2., 9. 4. 개최된 헌법재판소 국민초청행사 세부 시행 계획안
119	〃	〃	홈커밍데이 행사 참석자 현황(전직 구성원)	홈커밍데이 행사에 참석할 참석자 111명의 성명, 재임기간 등이 기재된 보고서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120	2016. 9. 5	○○○ ○○○	2016. 9. 1.자, 실국장 회의자료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작성한 2016. 9. 실국장 회의자료
121	〃	〃	2016. 9. 월례회의자료(헌법 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2016. 9. 월례회의자료 각 팀별 전월 추진실적, 당월 추진계획 등 기재
122	2016. 9. 19.	○○○	복면집회금지에 관한 헌법적 검토	2016. 9. 30. 발표 예정인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권 연구팀 ○○○ 책임○○○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 (캐나다 및 미국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123	2016. 10. 4.	○○○ ○○○	2016. 9. 30.자, 실국장 회의 자료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작성한 2016. 10. 실국장 회의 자료
124	2016. 10. 10.	이규진	헌재 내부 정보	김정원 선임부장으로부터 들은 헌재법 개정 준비 관련 내용, 헌법재판소장과 김용현 처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 서기석 재판관과 안창호 재판관이 차기 소장을 노리고 뛰고 있다는 내용 등 헌재 내부 동향 정보
125	2016. 10. 11.	〃	헌재 내부 정보	헌재 차기 소장 관련 헌재 내부 동향 정보
126	2016. 10. 14.	○○○ ○○○	헌재 내부 정보	권한쟁의 심판 사건 관련 대법원 의견서 제출에 부정적이라는 내용 등 헌재 내부 동향 정보
127	2016. 11. 1.	○○○	2016. 10. 31.자, 실국장 회의 자료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작성한 2016. 11. 실국장 회의 자료
128	2016. 11. 10.	〃	2016. 11. 2.자, 2016. 11. 백송 포럼 자료	각 부서별 주요 행사 및 업무현황, 전월 회의 조치결과, 토의안건 내용 등이 기재된 백송 포럼 자료
129	2017. 3. 16.	〃	2017. 3. 20.자, 인사발령 (헌법○○○) 통보 공문	헌법재판소 인사관리과 시행 2017. 3. 20.자 헌법 ○○○ 인사발령 통보 공문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2018. 5. 25.자 조사보고서
2. 2018. 11. 14. 자 임종헌 공소장